

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 일부개정(안)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검토 결과

□ 「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」을 일부 개정함에 따라 「자연공원법 시행규칙」 제24조에 의거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 검토 결과를 아래와 같이 알려드립니다.

□ 검토 결과

○ 의견 청취 개요

- 내 용: 「국립공원수입징수규칙」 일부개정(안)에 대한 이해관계인 의견 청취
- 의견 청취 기간: 2025. 11. 11. ~ 2025. 11. 20., 10일 간
- 건 수: 총 10건(중복 2건)

○ 의견 청취 검토 결과

번호	제출자 (성명 or 닉네임)	의견 요지	검토 결과
1	참***	○ 타 이용 요금 대비 자동차 야영장 요금 인상 폭 과다 ○ 전기차 이용객 등 전기 이용 없을시 이용 기준 마련	○ 일부수용 - 자동차야영지는 전기사용료 별도에서 포함 요금제 전환에 따라 30% 인상 수준임. - 전기를 이용하지 않는 이용객에 대해서 전기 사용료를 제외하는 방안 마련하겠음.

2	G****	○ 시설 개선 없이 자동차야영장 인상을 과다 등 극단적 가격 인상 이해 불가	○ 수용 어려움 - 국립공원 야영장 신규 조성 및 시설 개선 사업을 지속하고 있으며, 지난 '17년 이후 9년만의 인상 으로 물가상승률 및 국·공립 유사시설 수준을 감안하여 인상하는 사안임. - 자동차야영지는 전기사용료 별도에서 포함 요금제 전환에 따라 30% 인상 수준임. - 정부와 적극 협의를 통해 편의시설 개선에 노력하겠음.
3	김**	○ 자동차 야영장 사용료 인상을 과다 ○ 요금인상 시 사설 야영장 요금 인상의 명분 생성	
4	I*****	○ 현재 요금체계 유지 요청	
5	이**	○ 사용료 인상 폭 과다 및 요금 인상 필요성 ○ 감면 제도 “확대”의 실질적 효용 미흡 ○ 대피소 인상은 산악 안전정책과 충돌 ○ 환불·위약금 기준 개정은 이용자 불이익 확대 ○ 주말·성수기 요금 다층화로 이용자 혼란과 접근성 저하	○ 수용 어려움 - 국립공원은 국민의 세금으로 관리하고 있기에 공원시설(야영장, 생태탐방원 등) 이용은 이용자 부담원칙이 적용됨. - 또한, 정부의 승인을 거쳐 결정된 국립공원 이용료에 따라 징수된 국립공원 수입은 공원 관리에 전액 사용되고 있음.

6	주**	○ 요금 인상 폭이 너무 높음에 따른 사설 이용료 상승의 도미노 효과 유발 ○ 다자녀 감면율 확대 요청 ○ 시설의 근본적 문제개선 요청(어린이·가족 이용자 시설 부족, 접근성, 입·퇴실시간 엄격)	○ 일부수용 - 장기간 동결된 국립공원 이용료를 국·공립 유사시설 수준으로 인상하는 사안임 - 다자녀 감면은 산림청 등 타기관과 유사한 수준의 감면율을 반영하였으며, 시행 후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음. - 시설 개선 및 이용자 편의를 위한 방안(입·퇴실 시간 조정) 등에 대해 적극적으로 추진·노력하겠음.
7	김** (중복 제출)	○ 높은 인상률 불만(자동차야영장 예상) ○ 다자녀혜택 미성년자가 아닌 성인 자녀도 혜택 적용 요청	○ 수용 어려움 - 자동차야영지는 전기사용료 별도에서 포함 요금제 전환에 따라 30% 인상 수준임. - 타 제도·지자체 기준도 다자녀혜택은 대부분 미성년자 기준임.
8	윤** 김**	○ 사설 캠핑장 대비 낮은 시설 수준 감안 ○ 높은 인상율 불만 ○ 국가보훈대상자에 대한 감면율 미흡	○ 일부수용 - 장기간 동결된 국립공원 이용료를 국·공립 유사시설 수준으로 인상하는 사안임 - 감면율의 경우 시행 후 제도 안정성 및 재정 여건 등을 고려하여 확대 방안을 검토하겠음.